

2006년 장애인들의 새로운 요구 복지에서 인권으로

- 2006년 장애인들의 새로운 법 제정 요구 -

2006년 새해가 밝았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회 내 통과를 목 놓아 외치고 몸부림쳤지만 안타깝게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 문제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관점으로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한해였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450만 이상의 장애인이 있으며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보다는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 아직도 장애아동 중에 50% 이상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장애인의 70%가 랑이 직업이 없거나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에 살고 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80년 초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끊임없는 운동과 싸움을 전개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직업 및 고용촉진법,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만들었고, 2005년 1월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7월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독립된 6개 법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연금법, 성년후견인제도, 장애인교육법, 중증장애인직업법, 자립생활지원법, 장애인개호법 등 새로운 법안 제정을 정부나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위의 법들이 추가로 제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장애인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6년도 우리나라 장애계의 핵심과제이자 장애인운동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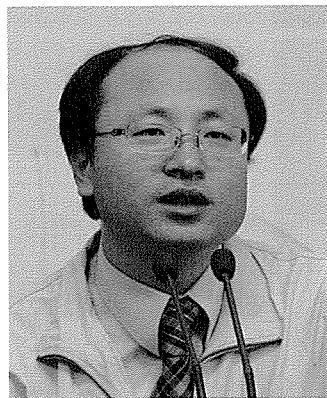
2003년 4월 16일 7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여 이 땅에서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주 선언을 하였다.

2004년 11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단체 70개로 구성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2년 간의 성과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에구제 등에관한법률' 최종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2005년 9월 정기국회 때 노희찬 의원의 대표로 발의되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서비스법이 아니라 인권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보다는 법사위에서 심의해 주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법안은 총 6개장 104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장애 및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에는 고용, 교육, 건축물



글 | 신용호(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대표)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의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시설, 건강권, 폭력 등 14개절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3장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에서는 특별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들의 권리 선언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는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진정, 조정, 시정조치(이행권고, 이행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의 흐름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손해배상 하한선 도입과 해당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그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 제한된 형태의 정별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였으며, 제6장 벌칙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확두였다.

■ 성년후견제

2004년 2월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송파통합장애인 부모회, 태화샘솟는집 3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년후견제 연구모임을 가졌다. 이를 시작으로 민법 개정안 의견서에 성년후견제 연관을 촉구했으며,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준비위를 구성하였다. 수차례의 자체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현재 나경원국회의원실(한나라당), 이은영국회의원실(열린우리당), 정화원국회의원실(한나라당)과의 연대속에 2006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무능력자'라는 용어는 거부감이 들고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여 피후견인 등의 대체용어를 사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노인의 경우에 그 증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일률적으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하도록 법 제9조 및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에 근친자가 선고받는 자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본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필요적 선고 규정은 삭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리 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조 개시 결정을 받도록 하고,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보조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현 민법 제930조에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후견인이 단순한 신상개호에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까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없고, 단지 재산관리 정도에 그치게 되어 피후견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상개호를 할 수가 없으며 후견인의 전횡을 막기가 어려우므로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삭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민법 제960조 이하에서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친족회를 두고 있는데 친족회가 후견감독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근친 간의 불화만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후견인 감독기관을 친족회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후견인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법인 포함)를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장애인연금제도

2002년 한국뇌성마비연합회, 한국뇌성마





비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부모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3월 정부의 연구 용역안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2005년 4월 장향숙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이 무기여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이고 둘째는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의 소득보존이다.

추가비용은 이동수당, 의료지원수당, 정 보접근수당, 24시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 보호수당 등 4종으로 하였고, 소득보존은 빈 곤충(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기준인 104만원 이하의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한다. 장애 계의 입장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 다소 큰 차이가 있어 많은 시간을 갖고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증장애인직업법(가칭) 제정

200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아래

중증장애인사업장공대위)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반 예산 확보 운동 과정에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중증장애인직업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과 중증장애인사업장공대위 참여단체 등 11개 관련 단체와 몇 분의 교수 등을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직까지 법안 내용은 없으나 몇 가지의 방향성을 생각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기존 고용율 2%를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중증장애인 고용업무의 담당은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현재의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고용 전달체계상 현재는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의 확보 부분인데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예산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연구하고 있다.

■ 장애인교육법 제정

장애인교육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교육권 연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학부모를 중심으로 전교조, 민노당 등 사회민주세력의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법을 장애인교육법으로 대처 입법하여 실질적인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적으로는 교육법에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과,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교육의 실현, 장애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보장,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 100% 달성 -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신규 법안 제정 요구는 향후 2-3년 장애계의 핵심 과제이자 운동의 초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들은 위의 법들이 제정되어야지만 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 장애인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끊임없이 욕구를 분출하고 있다. 매우 역동적이다. 장애인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2006년도에도 매우 희망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참여와 권리의식 고양, 장애인 인권 감수성의 높음으로 인해 한층 더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의 인권이 한 단계 도약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식적인 법·제도의 완성과 더불어 어떻게 내용을 채울 것인가 하는 장애인복지나 인권의 내용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W